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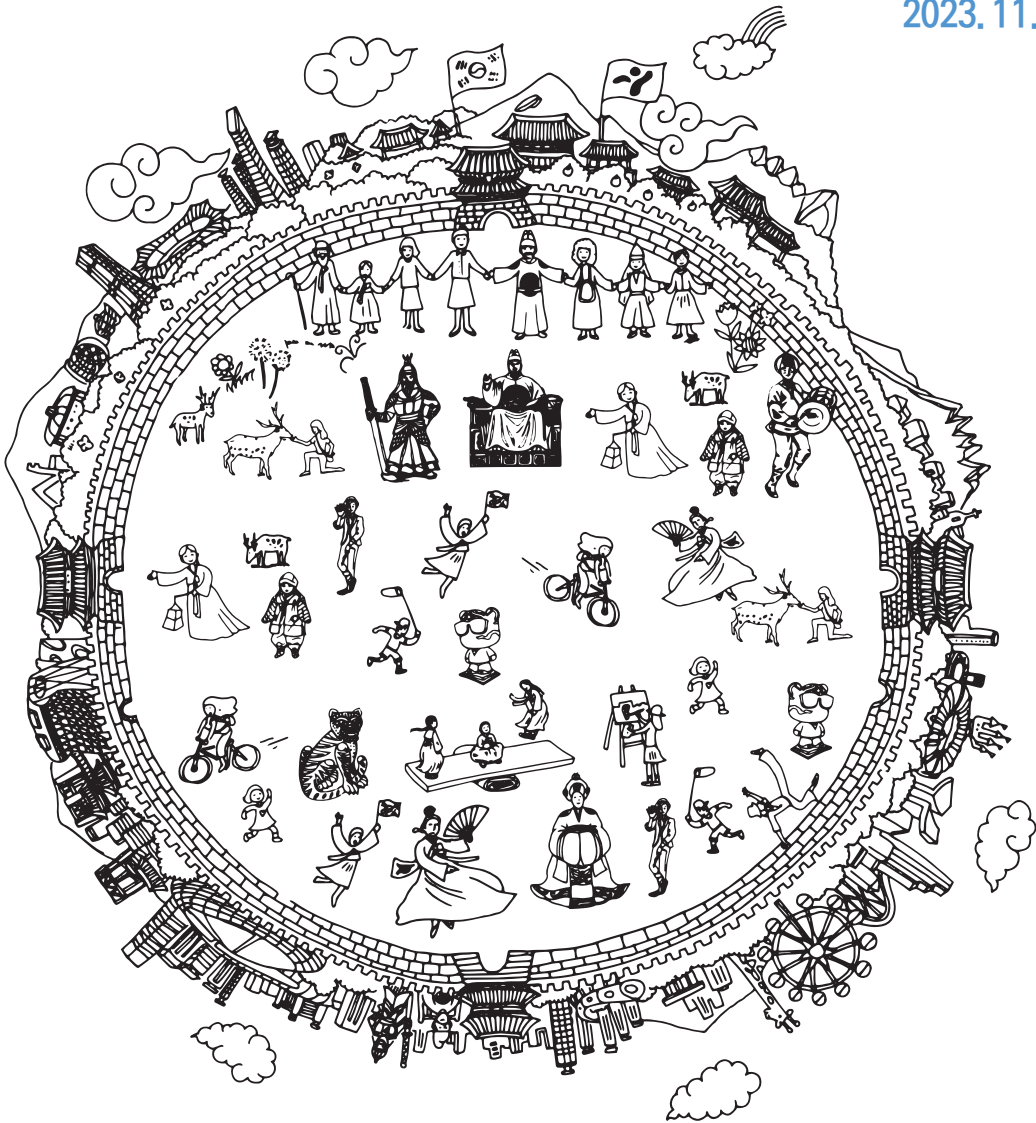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928호
2023. 11. 14.(화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3-497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97호

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

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,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, 「건축법」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14일

서울특별시장

1. 건축허가 등 제한

가. 제한목적 : 주택재개발 후보지(미선정) 내 건축행위로 인한,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,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

나. 제한근거 : 「건축법」 제18조제2항

다. 제한기간 :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(단,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)

라. 제한구역 : ' 23. 10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(미선정)

자치구	위치	구역면적(㎡)	제한면적(㎡)	선정여부
성북구	성북동 29-51일대	16,002	16,002	미선정

마.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

미선정구역

1) 제한대상

가)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

나)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

다)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(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)

라)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
마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
단, 제한대상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

※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: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,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

2) 제한제외 대상

- 가)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재축, 대수선(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)
- 나)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재축, 대수선
- 다) 「건축법」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
- 라) 「재난안전관리기본법」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
단,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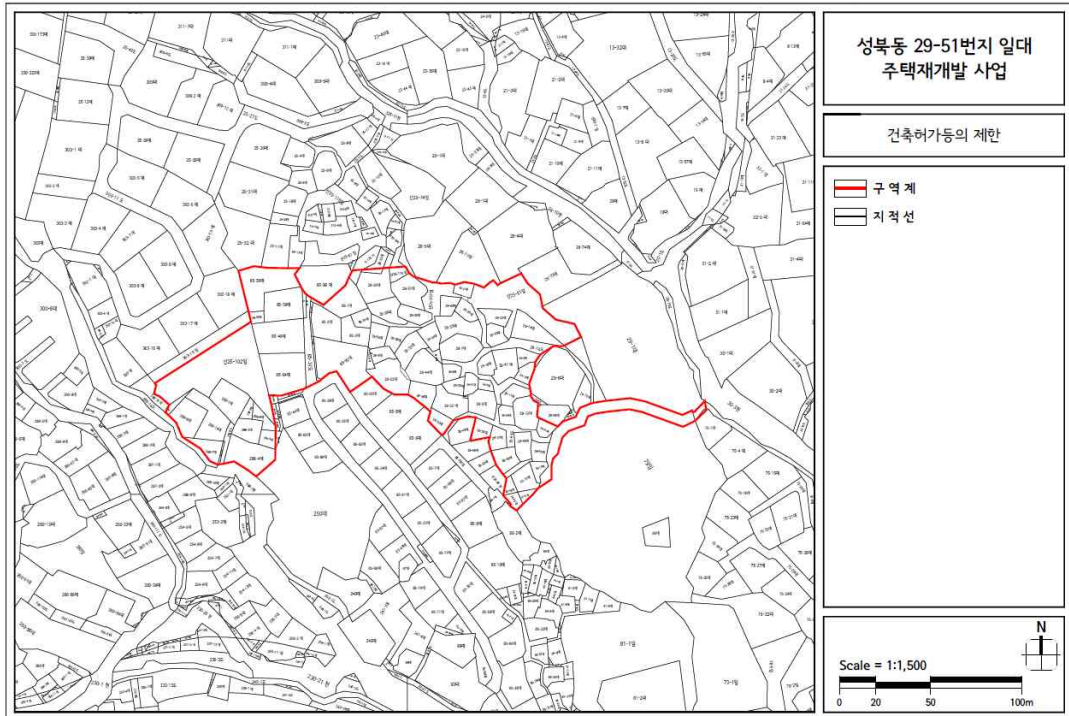
2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3. 안내사항
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2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,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
■ 지형도면

○ 성북구 성북동 29-51번지 일대

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